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1일, 박수영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3.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3.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영의원)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되었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더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도 2023년 제5차 재정 계산에 서는 2055년으로 제4차 재정 계산 결과에 비해 2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 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 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 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상향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 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구 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은 있으나, 가입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것이 가입자의 소득 등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가 일 반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고, 각 구 간의 경계 전·후로 출생한 가입자 간에 생애 보험료 부담이 역전되 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1998년 이후 27년간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제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 등을 통하여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수용성 높은 대안에서부터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노후생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노후를 지키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보험료율 인상에 상응하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재까지의 기금운용수익률(약 6.1%)을 반영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정하여져야 함에도 정부안(42%)은 그에 미흡하다는 의견, 명목소득대체율이 40%일 때 국민연금기금을 70년 이상 유지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은 $18.1\% + \alpha$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더라도 불완전한 측면이 있으며, ‘표적효율(target efficiency)’에 부합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으로의 재설계와 의무 가입 퇴직연금의 제도화 등을 위한 특위를 가동하여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할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향후 기금적립금이 줄어드

는 단계에서는 기금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특위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마무리 무렵('24.5월) 명목소득대체율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44%를 언급하였고 민주당은 당초 45%에서 44%로 수정·제안하였던 점에 비추어 정부안(42%)을 지적하는 의견, 연금개혁의 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한 후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으로서 특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개정안의 내용을 채택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